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KH/S/ 2015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 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구생성차수

2015년 3월

가구분리일련번호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 044-287-8124, 8138, 8294, 8324, 8159, 817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 * | 가구 때 글 IU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 | | | 사 기구: C 차 신규가구: (차 신규가구: (차 신규가구: (차 신규가구: (※인3 | 13 15 17 | - 2차 전류가 - 4차 신규가- - 6차 신규가- - 8차 신규가- -10차 신규가- 를 그대로 이기 | 구: 04 구: 06 구: 08 | -첫 번째 -두 번째 | 기구: 01 분리가구: 01 분리가구: 02 분리가구: 03 | 인 숫자를 그대로 | 0 7 | |
|-------|--|------|-----|------|--|----------------|--|-------------------------|----------------|--|---|--------|--|
| | | | | | | | | | | | | | |
| 행정코드 | | | | | | | 시시 | ·도 | | _구·시·군 _ | | _동.읍.면 | |
| 주소지 | 상세주소 _ | | 통·리 | 번지 _ | 호(_ | 아파트 | 돌동_ | 층 _ | ই) | a () _ | | | |
| -11- | 7.T. W.M. | | | | 응답자 | | | | | 응답자 2 | | | |
|)t- | 구주 성명 | | 성명 | | | 가구원 번 호 | | 성 | 명 | | 가구원 번 호 | | |
| | | | 휴대폰 | | | | | 휴[| ዘ폰 | | | | |
| 조사표완 | 료 소요시간 | | 총 | 분 | - | 총방문 | 문횟수 | 총 | | 회 | | | |
| 1차방문 | 월 | _일 _ | 시 | _분 방 | 문결과 | ① 완료 | ② 미완 | ☞ 사유(| 번호기재 |): | ※미완/ | 크토유네 | |
| 2차방문 | 월 | 일 _ | 시 | _분 방 | 문결과 | ① 완료 | ② 미완 | ☞ 사유(| 번호기재 |): | ∅ 비해당(완료① 늦은 귀가◎ 가기하다 |) | |
| 3차방문 | 월 | 일 | 시 | _분 방 | 문결과 | ① 완료 | ② 미완 | ☞ 사유(| 번호기재 |): | ② 장기출타③ 부재중(원인④ 일부문항 미 | | |
| 4차방문 | 월 | 일 _ | 시 | _분 방 | 문결과 | ① 완료 | ② 미완 | ☞ 사유(| 번호기재 |): | ⑤ 조사거부 ⑥ 이사(주소추적불가) ⑦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실 ⑧ 기타 추적불가사유 ⑨ 기타 | | |
| 최종방문 | 월 | 일_ | 시 | _분 방 | 문결과 | ① 완료 | ② 미완 | ☞ 사유(| 번호기재 |): | | | |
| 조사원 이 | 름 | | 지도원 | 확인 | ① 완료 | ② 미완 | ☞ 사유(번 | 호기재): | | 지도원 | | (인) | |

I. 가구일반사항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일반사항은 [인포시트]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가 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단, 가구주가 바뀐 경우 바뀐 가구주를 가 구워번호 1번에 기입.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2014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 | 개인 패널ID | 개원 이름 | 듄 | - 2) | Τ. | 문3) | 문 | 4) | 문5) 교육 | 수준 |
|----------------------------------|--|----------------------------|---|--|-----------------------|------------|--------------------|-------------------------------|---|---------------------------------------|
| 71701 | 개인 페일ID | 번호 이금 | 가구주의 | 라의 관계 | | 성별 | 태어난 역 | | 문 5-1) | 문5-2) |
| 가구원 진입 차수 |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 인포시트상의 개인패 널ID를 그대로 이기하 고 10차 지인가구워의 | ※ 가구원 순서 이름 대로 기입 | * 가구주와의 으로 기입 ³ 와의 관계 코드번호 2 * 가구주 정 9 | 후 아래 [가 또]를 참고현 기입 | 구주 하여 (| ① 남 ② 여 | 기재하여 주십 | 의 생년, 생월을 십시오 잔시트]와 비교하 |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 ① 비해당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로 |
| -10차 가구진입 가구원:10 | 고, 10차 진입가구원의 경우 새로운 개인패널 ID를 부여 | | 대주와는 관 를 실질적의 실상 생계를 사람 | 바계없이 그 | 가구ㅣ | | | |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 ⑤ 졸업 |
|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이기 | | | <u> </u> | 가구주의 관계 코 | | | 생년 (生年) | 생월 (生月) |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 |
| | | 1 | | 0 1 | 0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 01 | 0. | 가 | 구주 |
|----|----|---|----|
| | | | |

001. 가구주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

005. 가구주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

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

| 가구원 | 문6) 장애종류 및 등 | 급 | | | |
|--------------|--|---|--|--------------|--|
| 번호 | 문6 -1) 장애 종류 | 문6-2) 장애등급 | 문7) 혼인상태 | 문8) 종교 | 문9) 동거여부 |
| ※순서대 로 기입 |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신장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⑪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안면장애 (지적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가폐성장애) ⑤ 간질장애 (하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가정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 () 비해당(비장애인) () 1급 (2) 2급 (3) 3급 (4) 4급 (5) 5급 (6) 6급 (7)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보훈청애가 복지카드에 표시되어 합산되어 있는 경우이를 그대로 기입합니다. | () 비해당 (18세 미만) ()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별거 (5) 미혼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6) 기타(사망등) | ① 있음 ② 없음 |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문10) | 가구형태 | ① 단독 ② | 모자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 |
|-------------------|----------|--------|--|--|
| 문11) 기초보장 수급형태 | | 문11-1) | ① 해당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 |
| | | 문11-2) |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 |
| 문12) | | 문12-1) | ① 해당없음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
| 의로 | 료급여 수급형태 | 문12-2) |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②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 |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응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 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u>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u>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u>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u>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 * 기초보장수급 형태 및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수급가구 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 가구원 | | 문1) | | | | 문3) 2014년 1년 중 | 문4) 2014년 1년 중 |
|----------------------------------|-----------|--|---|---|--|---|--|
| 기 년 번호 | 이름 | 2014년 12월 31일 기준 | 문2) 2014 | 년 1년 중 의 | 료기관 이용 | 201 4 년 1년 8 병원에 입원한 | 주로 이용하는 |
| | | 건강상태 | | | | 이유 | 의료기관 형태 |
|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가구원 이름 |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00 | 문2-3) 입원일수 (예) 20일→020 없음→000 | ①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 (1) 비해당 (1) 종합, 대학병원 (2) 병·의원(지역내/지역외) (3) 한방 병·의원 (4) 보건소 (5) 기타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0 | | | |
| 9 | | | _ | | | | |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2-2) 입원횟수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⑩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2014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⑤ 요양/휴식'은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기타'로 표시합니다.

| 가구원 번호 | 문5) 2014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 문6) 만성질환 | 문7) 주요 병명 | 문8) 2014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
| ※ 2쪽의 | 2014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 ① 비해당 | (예) 위염 → 03 | (예) 3개 → 03 |
| 기구원 번호 | (예) 1회 →1 |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 없음 → 00 | 없음 → 00 |
| 순서대로 | 없 음→ 0 |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 | |
| 기재하시오. | |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진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 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병명

- ※ 아래 [주요병명코드] 를 참조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중복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표기합니다.
- ※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 또는 임신 및 출산 또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의 경우는 주요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 없음'으로 표기한다.
- ※ <u>급성질환의 경우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⑩ 기타 질병'으로 기록(</u>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1> ① 급성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정신분열 등)의 경우에도 '⑩ 기타 질병'으로 기록합니다.
- <u>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⑩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록(</u>의료급여제도에서 의료급여특례로 인정하는 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
 1> ②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l(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상해보험, 일반질병 보험, 특정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예) ○○○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 <u>CI(Critical Illness)보험</u>: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통 종신보험과 묶어서 판매되며, 질병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문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 ※ <u>실손형 의료보험</u>: 질병이나 상해로 병·의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입원비, 진료비, 수술비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장하는 보험
-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u>가구원</u>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 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 [주 | 요병명코드] | | | | | | |
|-----|-------------------|------|---------------------|-----|-------------|-----|-----------------|
| 1 | 암(위, 간, 폐, 기관지등) | (10) | 폐결핵, 결핵 | 19 | 고지혈증 | 28 | 치아우식증(충치) |
| 2 |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 (1) |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 20 | 치질(치핵) | 29 |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
| 3 |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등 | (12) | 천식 | 21) | 만성부비동염(축농증) | 30 | 기타질병(급성질환 등) |
| 4 | 만성간염, 간경변 | (13) | 백내장, 녹내장 | 22 | 기관지확장증 | 31) | 희귀난치성 질환 |
| (5) | 당뇨병 | (14) | 만성중이염 | 23 | 알레르기성 비염 | 32 | 저혈압 |
| 6 | 갑상선 질환 | (15) |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 24) | 턱관절질환 | @ | 없음 |
| 7 | 고혈압 | 16 |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 25) | 아토피성 피부염 | | |
| 8 | 중풍, 뇌혈관질환 | 17) | 골다공증 | 26 | 요실금 | | |
| 9 | 심근경색증, 협심증 | 18 | 빈혈 | 27) | 우울증 | | |

III. 경제활동상태

-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 당시 만15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 가구원 번호 | 이름 |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 문2) 근로무능력사유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 (12월 31일 기준) |
|-------------------------------------|-----------|--|--|---|--|
|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가구원 이름 | ① 만4세 이하 → IV 회보험 으로 갈 것 ①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 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 문3)으로 갈 것 ③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 문3)으로 갈 것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문2)으로 갈 것 |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지는 문3)에서 '⑨ 비경제활동인구'로 응답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23-1)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23-1)로 갈 것 ⑤ 고용주 ─────────────────────────────────── | ① 상용적 임금근로자 ② 임시적 임금근로자 ③ 일용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기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응어해설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 | 1. 상용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 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 | | | | |
|----------|--------------------|------------------------|---|--|--|--|--|--|
| | | 2. 임시직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 | | | | |
| 74 711 | 취업자 | 3. 일용직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 | | | | |
| 경제 활동 | |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 | | |
| 인구 | | 5. 고용주 |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 | | | | |
| | | 6.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 | | | |
| | | 7.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 | | | |
| | 실업자 | 8.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 | | | | |
| 비경제 | 비경제활동인구 9. 비경제활동인구 |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 | | | |

-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속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휴직자(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 직 등)도 취업자로 파악한다.
-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는 지침서를 참조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12월 31일 기준)

※ 문3)에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상황에 따라 12월 31일은 쉬고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응답합니다.

| 가 구 원 번호 | 문4) 고용관계 | 문5) 근로시간형태 |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문 7) 근로지속기능성 | 문 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
|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3)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1)로 갈 것 |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 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 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 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 종속관계가 긴밀하다.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소속의 고용주-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근로자'간의 삼각관계가 성립한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지입형태의 레미콘 (화물, 덤프)기사, 택배원(퀵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학원차량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학원에 속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십장(혹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문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괴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 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 기 구 원 번호 | 문8) | 업종 | 문 | 9) 직충 | 종 | | | 문10) 사업 | 엄장 규모 |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
|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 [지침서 산업분류를 분류 코드 기입하시의 ※자활 및 노인일자리 업종의 산 기입함. | 코드에서 중 2자리를 2. 2. 공공근로, 니도 해당 | ※ 좌측 직업명은 업코드는 [지침서] 에서 소분류 코드 | <부록 | 3> 직업 | 업분류: | 코드 |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③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 ⑪ 잘 모르겠 | 형 형 상 |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 | | | 직업명 | | 직업 | 코드 | | | |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군복무 대기자도 ② 군복무로 응답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 ① 문3)에서 '①~③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 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햄버거의 OO지역 체인점의 경우는 햄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OO지역 체인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OO그룹의 OO자동차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 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OO 업체의 소속으로 급여도 OO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OO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로 응답한다.
- ② 문3)에서 '⑤~①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가구원 | | 공적인 | 연금 가입 | 국민연금 | | | | |
|-------------------------------|-----------|--|---|--|-------------------------|---|--|--|
| 번호 | 이름 |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문3) 가입종별 | 문 4) 국민연금납부여부 | 문5) 미납유형 | | |
|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 가구원 이름 | ● 비해당 →문9)로 갈 것 ●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보훈연금은 제외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말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예 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 | ① 납부예외자 ★문(5)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이지만 실직, 사 업중단, 휴직(출산, 육아 등),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는 사람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⑥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⑥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입)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954년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인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가입자이었던 자가 만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하고, 문8)미가입 이유에 ⑥만60세 경과로 기입)

⑥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 가구원 | | 국민연금 | | | | | | | |
|-------------------------------|-----------|--|--|------------|---|------------------|--|---|---|
| / 기 년 번호 | 이름 | 문6) 납부예외 사유 | 문6-1) 납부예외 기간 | | 문7) 미납 이유 | 문7-1) 미납 기간 | | | 문8) 미가입 이유 |
|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 가구원 이름 |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 2014년 1년간 납부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갈 것 ※ 2014년 1년 기를 | 않은 기 까? | ●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14년 1년 기준임.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14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 '⑩비해당'으로 기입하고, 미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①~⑤ 중 응답. | * 2014 * 2014 | 개월이니 기까? 로 갈 것 년 1년 7 년 1년 7 없는 경 | - - - - - - - - - - - - - - - - - - - |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⑥ 만60세 경과 |
| 1 | | | | 개월 | | | | 개월 | |
| 2 | | | | 개월 | | | | 개월 | |
| 3 | | | | 개월 | | | | 개월 | |
| 4 | | | | 개월 | | | | 개월 | |
| 5 | | | | 개월 | | | | 개월 | |
| 6 | | | | 개월 | | | | 개월 | |
| 7 | | | | 개월 | | | | 개월 | |
| 8 | | | | 개월 | | | | 개월 | |
| 9 | | | | 개월 | | | | 개월 | |

| 가구원 | 산재/고용보험 | | 퇴직금/퇴 | 직연금 | 개인연금 | 건강보험 |
|----------------------------------|---|--|--|---|--------------------------|--------------------|
| 기丁권 번호 |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 |
| ※ 2쪽의 기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 ◎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 직원, 군인의 경우 '⑤ 비해당'에 해당. 별정우체국직원의 경 우는 별도이므로 가 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⑥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 업자는 '⑥ 비해당'이 며, 고용주는 사업장 이 산재보험 가입 사 업장인지에 따라 '① 가입' 또는 '②미가 입'으로 분류함. |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⑥ 비해당'에 해당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⑥ 비해당'임. ※ 2012.1.22 이후자영자 및 고용주(50인 미만 근로자사용)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모두가입 가능 |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 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 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 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 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 우도 '①'로 응답 |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 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여 근로자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시행. |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 - 무료진료 ⑧ 미가입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V. 의료 B | |
|---|-----|
|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문 1) 귀댁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 ① 그렇다 → <mark>문1-1)로 갈 것</mark> ② 아니다 → <mark>문1-2)로 갈 것</mark> | |
| 《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 이 경우 '① 그렇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다. |
| 문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 |
| 《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u>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u> ※ <u>건강보험 가입자는</u>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u>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 1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최</u> 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u>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u> 제외한 자)로 구분됩니다. | |
| 응답 후 문 2)로 가십시오. | |
| 문1-2) (문1)의 ②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
| ① 의료급여(1종) ② 의료급여(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④ 미가입 | |
| 〈 유의사항 〉 ※ 한 가구 내에서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u>가구주 가입을 기준</u> 으로 합니다. 단, 가구 ²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u>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급여를 기록</u> 해 주십시오. ※ <u>의료급여</u> 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
| 1종 2종 |] ; |
| 정의 - 입원: 무료, 외래: 500~2,000원/특수장비총액 5% - 입원: 급여비용의 10%, 외래: 500원~15%/특수장비총액의 15%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무형 무형 무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 만), 행려환자, 노숙인 무형면화자보유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무형문화자보유자, 무현문화보유자, 무한문화보유자, 무현문화보유자, 무한문화보유자, 무한문화보유자, 무산문화보유자, 무산문화보유자, 무산문화보유자, 무산문화보유자, 무산문화보유자, 무산문화보유자, | |
|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란, 의료급여(1종, 2종)와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한국 구시에 구시에 구시에 구시에 구시에 구시에 구시에 구시에 구시에 구시에 | 투립 |
| 문1-3) (문1-2)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① 혜택범위가 좁은 것(본인부담이 많은 것) ② 적용기간의 제한 | |

응답 후 문5)로 가십시오.

| 문 2) | 귀댁에서는 2014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
| | ① 있다 → <mark>문2-1)로 갈 것</mark>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 ļ |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
| ÷ |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u>2014년 1년 중</u>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 | 연간 개월 |
| 문 3) |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① 월보험료 부담 ③ 기타(적을 것:) |
| 문 4) |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 문 5) |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
| | 전혀 별로 보통 대체로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 문 6) | ('II.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u>2014년 12월 기준</u> 으로 귀 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u>12월 보험료</u> 는 총 얼마나 됩니까? |
| | 12월 보험료 합계 _{백 십 일} 만원 |

| | ۷۱. ۲ | ^트 거 | |
|--|--|--|--|
| 문 1) | 귀댁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 | 이에 이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
| 문 2)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일반단독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빌라) 일반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 (7)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8)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9) 오피스텔 (10)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11)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12) 기타(적을 것 :) (13) 국민임대아파트 | |
| | 〈 유의사항 〉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0 | 주십시오 | |
| i. | | | |
| 문 3)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 어디였습니까? | |
| | ① 지하층② 반지하층 | ③ 지상 ④ 옥탑 | |
| | 〈 유의사항 〉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 주십시오. |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③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일라) ⑤ 일반아파트 ⑥ 영구임대아파트 ① 기타(적을 것 : ③ 국민임대아파트 ② 오회스템 《 요외사망》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① 지하층 ② 반지하층 ③ 지상 ④ 옥탑 | | | |
|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 | | |
| 문 5) | (유의사항 > | | |
| | | | |

| 문 6)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 점유형태는? | |
|--------------|--|---|------|
| | (1)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 문7)로 갈 건 ⑤ 기타 | 글세) 문10 <u>)으로 갈 것</u> | |
| | 《 유의사항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 점유형태'⑤기타'에는 <u>무상</u> 인 경우도 포합됩니다. | 다.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⑤기타'가 됩니다. | 2 |
| ŕ |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원 금액 세계 11의 11 만원 | 은 얼마나 됩니까? | |
| | 《 유의사항 》 ※ <u>자가</u> 의 경우 주택가격, <u>전세</u> 의 경우 전세금, <u>보증부월세</u> 의 보증금을 응답한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령, 집이 (가구원이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 |
| 문 8) 문 9) |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1)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2)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4)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 (5) 사채 | 말씀해 주십시오. | 2순위 |
| | 구 분 | | |
| | ② 2014년 1년간 주택관련 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 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십억 일억 천 백 십 5 | 만원 |
|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 만원 |
| |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 없음= '0'으로 표시합니다. |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 | 합니다. |
| | 문 9-1) 2014년 1년간 대출상환액 (이자포함) 의 연체 횟수는 일 | 얼마나 됩니까? | |
| | ① 연체한 적이 없다② 1회 | (3) 2~3회 ④ 4회 이상 | |
| |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가 없거나 2014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 연체한 적이 없다'에 표기해 주십시오. | |

문 10)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 예 | 아니오 |
|---|--|----|-----|
| 7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 1) | 2 |
| Ÿ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 1 | 2 |
| 다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 | 2 |
| 라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 1 | 2 |

문 11)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 시설종류 | 사용형태 |
|-------------|--|
| ⑦ 상·하수도 |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 부엌 |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 ⑤ 화장실 | ① 단독사용-수세식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 ඓ 목욕시설 |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
| ⑪ 난방시설 | ① 연탄 또는 재래식(땔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

문 12) 2014년 1년간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 주거복지 관련 사업 | 경험이 있다 | 주거복지 관련 사업 | 경험이 있다 |
|--------------------------|--------|--|--------|
| ② 영구임대주택 | | 라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 |
| ④ 공공(국민)임대주택 | |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 |
| ⑤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 | 바 기타(적을 것:) | |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u>
 ・ 기타'에</u>는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재건축 매입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②,④,●의 경우 2014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14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④,④,●의 경우는 2014년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 ※ 생활비: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 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의 경우 <u>구입시점기준(2014년 구입)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u>. 예) 2014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 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13년 중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2014년 에도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라도 2014년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 <u>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u>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u>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u>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 | | <u>2 740</u> M2 81 424 426 <u>8829444 M4644.</u> 2 4/10 71 64 4 | | | | | |
|--------|---------------------|--------------------------------|---|-----|--------------|-----|---------------|------------|
| | | 문 1-1) 가정식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 월평균 | 천 | 백 십 | 므 | <u> </u> |
| 문 1) | 식료품 비 | 문 1-2) 외 식 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무료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 | 월평균 | 천 | 백 십 | 민 일 | <u> </u> |
| | 문 1-3 주류·댐 |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주류.담배비는? | 월평균 | 천 | 백 십 | 민 일 | <u> </u> |
| 문 2) | 주 거 비 (주택 구입비 | 문 2-1) 월 세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가인 경우 '0' (단, 자가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 월평균 | 천 | 백 십 | 교 | <u> </u> |
| | 세외) | 문 2-2) 주거관리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 월평균 | 천 | 백십 | 민 일 | <u></u> 가원 |
| 문 3) | 광 열 | 수도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 월평균 | 천 | 백 십 | 민 일 | <u></u> 만원 |
| , | | | └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 천 | 백 십 | 민 일 | <u> </u> |
| 문 4) 2 | 기구 · 가사용 품 비 | 문 4-1) 가 구 집 기·가사 용품비 | | 월평균 | 천 | 백 | 민 일 | <u>마</u> 원 |
| | 1 | 문 4-2) 보육료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보육료는? ※ 보육료는 베이비시터, 놀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 월평균 | <u></u> 천 | 백십 | | <u>마원</u> |
| 문 5) | 의류 | 신발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외의,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 월평균 | 천 | 백십 | 민 | <u>마</u> 원 |
| 문 6) | 보건 | 의료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치료용바우처(비만이동바우처)이용료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 월평균 | 천 | 백 십 | 민 일 | <u>마원</u> |
| 旦 7) | 교육 | 문 7-1) 교 육 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 ※ 등록금(초·중·고·대학·대학원), 납입금, 입학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 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 월평균 | 천 | 백 십 | 므 | <u>마</u> 원 |
| | 비사 | 문 7-2) 교 육 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u>유치원비</u> ,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 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 월평균 | 천 | 백 십 | 므 | <u>마</u> 원 |
| 문 8) | 교양 | 오락비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싯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애견(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u>TV수신료</u> , <u>아동용자전거</u> 등 | 월평균 | 천 | 백 십 | 민 | <u>마</u> 원 |

| | 교통 | 문 9-1)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u>자동차 보험</u> 료,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등 | 월평균 | 천 | 백 | 십 | 일 일 | 만원 |
|-------------|----------------------|---------------------------|--|-----|--------------|------|----------|--------|--------|
| 문 9) | 통신비 | 문 9-2)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 월평균 | ر ب | 백 | <u> </u> | | 만원 |
| | | I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월평균 | | | | | 만원 |
| 문 10) | 기타소 | 비지출 | ※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ㆍ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 련(십일조 등)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관혼상비, 용돈 등 | | 천 | 백 | 십 | 일 | |
| | | | └ 경조비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 천 | 백 | 십 | | 만원 |
| | | ı | └ 종교관련비용(십일조 등)은 얼마입니까? | 월평균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문 11-1) 비 동 거 가 구 원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지취비용, 생활잡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 월평균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문 11) | 101 11 |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 부모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월평균 | 천 | 백 | 십 | 일 일 | 만원 |
| | | 문 11-2) 기 타 | ※ 자녀의 결혼 등으로 집을 시준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증여로 보아 제외함 | 월평균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예컨대, 이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 월평균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세금은? | | | | | | |
| | | |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주민세, 취등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 월평균 | 천 | 배 | A. | 잌 | 만원 |
| 문 12) | 세 | 금 | -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 천 | 백 | 십 | | 만원 |
| | | | └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 천 | 백 | 십 | | 만원 |
| | | | └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 천 | 백 | 십 | | 만원 |
| | | └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 | 월평균 | <u></u>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 L 부동산세는 얼마 입니까? | 월평균 | <u></u>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 | 이래그 | | | | | піоі |
| 문 13) | 사회보증 | 상부담금 | 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 월평균 | 천 | 배 | A) | 01 | 만원 |
| | | | 나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 전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 L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 전 천 | 백 | 십 | | 만원 |
| | | | L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 월평균 | 는 천 | 백 | 십 | | 만원 |
| | |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 | | | | | | |
| 문 14) | 총 생 | 활 비 | ※ 총생활비 = 1~13의 합계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기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 월평균 | 천 | 백 | 십 | 일 일 | 만원 |
| <u></u> 없은은 | <u></u> ከ⊏시 "Λ ±Υ | 기축 소득의 | 경우 이하 동일 | | | - 1: | | | |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 ※ 귀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월평균 기준) | 금액 |
|---|-------------|
| 문 15)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 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월평균 기준) | 월평균 전 백 십 일 |
| ※ 귀 가구의 주관적 적정생활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월평균 기준) | 금액 |
| 문 귀 가구가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 15-1) 하십니까?(2014년 월평균 기준) 적정생활비 총액 | 월평균 만원 |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 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 21-1 | 가구원 | 1) | ① 상용근로자 | | ②임시·일용 근로자 | |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 |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 | | ⑤ 어업 경영주 | | | ⑥무급가족종사자·가 사 또는 육아·학생 ·기타 | | | | |
|------|-----|----------|---------|-----|------------|-------|-----------------------|----------|----------------|-----|----------|----------|-----|----------|---------------------------------|-----|----------|------|-----|
| 성명 | 번호 | 해당 여부 | 일한 | 개월수 | 해당 여부 | 일한 | 개월수 | 해당 여부 | 일한 | 개월수 | 해당 여부 | 일한 | 개월수 | 해당 여부 | 일한 | 개월수 | 해당 여부 | 해당 | 개월수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명 | |
| | | 문항 | 2로 가 | 시오 | 문항 3 | 3으로 기 | 가시오 | 문항 | 4 로 기 | 시오 | 문항 | 5로 フ | 시오 | 문항 6 | 3으로 기 | 가시오 | 문항 | 7로 기 | 시오 |

〈 유의사항 〉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u>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u>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 <u>개월수는 2014년 동안 일한(해당)</u> 개월수 기입(예, 전년(2013)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년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쉰 후 7월 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 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된활동구분

-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 ④ 농 림 축 산 업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u>120만원 이상</u>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 경 영 주 : 매금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14.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원천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 가구원 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성명 여가 총급여액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번호 금액임. 연간 만원 1 일억 십억 십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연간 2 만원 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여가 3 만원 십억 익언 천 밴 십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연간 만원 4 십억 일억 백 십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연간 만원 5 십억 일억 배 십 여가 만원 6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십억 일억 백 십 처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7 연간 만원 십억 일억 천 백 십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하 동일함). 8 연간 만원 십억 일억 천 밴 십

연간

신언

익언

처

배

9

문 3) 임시·일용근로자

| [보조기입란 3-a]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월평균 일 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 성명 | 가구원 번호 | 월평균 일한횟수 | | 1회당(| 일당) | 보수 | |
|--|----|-----------|-------------|----|------|-----|----|----|
|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 | | 1 | | 백만 | 십만 | 일만 | 일 | 천원 |
| 수를 확인한 뒤, 2014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 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 | 2 | | 백만 | 십만 | 일만 | 일 | 천원 |
| 예) 2014년 가구원 A가 1~6월까지는 월 5회, 7~12월까지는 | | 3 | | 백만 | 십만 | 일만 | 일 | 천원 |
| 월 15회 일하였다면, 월 10회((30+90회)/12개월) 기재 | | 4 | | 백만 | 십만 | 일만 | 일 | 천원 |
|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5 | | 백만 | 십만 | 일만 | 일 | 천원 |
|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 | | 6 | | 백만 | 십만 | 일만 | 일 | 천원 |
| 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 7 | | 백만 | 십만 | 일만 | 일 | 천원 |
|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 | 8 | | 백만 | 십만 | 일만 | 일 | 천원 |
| * Mecz, 88cz, zcena Ma z 1 z 1 | | 9 | | 백만 | 십만 | 일만 | 일 | 천원 |

3-1.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 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 였습니까?

→ 상용근로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 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과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 성명 | 가구원 번호 | | 연간 총급여액 | | | | | | | |
|----|-----------|----|---------|----|-------|---|---|---|----|--|
| | 1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2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 | 일 | 만원 | |
| | 3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4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5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6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7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8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9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 [보조기입란 4-a]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 성명 | 가구원 번호 | 연간 총매출액 (A) |
|--|----|-----------|---|
| | | 1 | 연간 입역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 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 | | 2 | 연간 집억 일억 천 백 집 일 만원 |
| 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 | | 3 | 연간 집억 일억 천 백 집 일 만원 |
| ※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 | | 4 |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5 |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 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 6 |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7 | 연간 실역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8 | 연간 입역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9 | 연간 집억 일억 천 백 집 일 만원 |
| [보조기입란 4-b]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 | 성명 | 가구원 번호 | 연간 총비용 (B) |
| 은 얼마였습니까? | | 1 | 연간 집억 일억 천 백 집 일 만원 |
| ※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 | | 2 | 연간 입역 천 백 십 일 만원 |
| 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 | | 3 | 연간 입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4 | 연간 입역 전 백 집 일 만원 |
|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 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 5 |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6 |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7 | 연간 입역 전 백 집 일 만원 |
| | | 8 |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9 | 연간 십의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4-1 . 2014 년 1년(2014.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 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 은 얼마였습니까? | 성명 | 가구원 번호 | 연간 순소득 (A-B) |
| ※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 | 1 | 연간 실역 원 백 십 일 만원 |
| ※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 2 | 연간 실역 원 백 십 일 만원 |
| ※ 순소득에는 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 도 포함됨. | | 3 | 연간 dq gq 천 백 십 g 만원 |
|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一"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 | | 4 | 여가 마워 |
|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 | | 5 | 연간 입역 원 천 백 십 일 D |
| 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 6 | 연간 입역 원 천 백 십 일 D |
|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 | + | -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 | | 7 | 연간 _{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8 | <u>연간</u>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 | 9 | 연간 _{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4-2.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성명 | 가구원 번호 | | | 연긴 | ŀ 전(| 입소득 | Ę | |
|---|----|-----------|----|----|----|------|-----|---|------------------------|
| ※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2014년 2,000만원을 벌어 1,3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700만 | | 1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u>원 기입</u> ※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 | 2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_일 만원 |
| 없음. | | 3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_일 만원 |
| ※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 | | 4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_일 만원 |
|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 | | 5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_일 만원 |
| 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 6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_일 만원 |
|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 | 7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_일 만원 |
| | | 8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만원 |
| | | 9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_일 만원 |

| 문 5) | 농림축산업 경영주 | | | | | | | | | |
|-----------|--|---|--|--|--|--|--------|-----------------|--|--|
| 5-1. 2014 | 5-1.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 | | | | | | | |
| (소작 | 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 | | | | | (참고) 1 | 평≒3.3 m² | | |
| | ① 논 | 총 | | | | | | m ² | | |
| | ② 밭 | 총 | | | | | | m² | | |
| |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 총 | | | | | | m² | | |
| ※ 없음 0 |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 총 | | | | | | m² | | |

[보조기입란 5-a]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 판매량 = 판매량(재고의 판매량 포함)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총보유량임.

| × = | 5건답에서 중 구착양근 거국의 중오파양감. | | | | | | | | | |
|---------------|---|----|---------------------|-------------------------------|------------------|------------------|------|-----------------------------------|--|---------------------------------|
| 구분 | 예시 | 종류 | 총 수확량 (a+b+c) |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 자가 소비량 (b) | 이전 소비량 (c) | (천원) | 판매수입 (만원) (A=a*p÷10) | 자가 소비액 (만원) (B= b*p÷10) |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
| 곡류 | 미곡 : 메벼, 멥쌀, 찰벼, 찹쌀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 고구마 등 서류 등 | | | | | | | | | |
| | 채소 :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앵두 등 | | | | | | | | | |
| 채소 과일 류 | 채소 : 샐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여 로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록 목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 | | | | | | | | |
| | 가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 | | | | | | | | |
| | 겨 채소: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울 과일: 사과, 귤 등 | | | | | | | | | |
| 기타 작물 |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뽕잎, 과수묘, 뽕묘, 묘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축산업 | 소, 젓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젖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 기타 가축(면양 등) | | | | | |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5-2.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 | | | | | | |
|--|------------------------------|---------------------------|---------------------------|--|--|--|--|
|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 자가소비액 (B) | 이전소비액 (C) | 합 계 (A + B + C) | | | | |
| 면 간 총 십억 일억 천 벡 십 일 | 면 간 용 실역 일억 천 백 십 일 | 면 간 총 실억 일억 천 백 십 일 | 면 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 | | |

[※] 재고판매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 5-3.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 | 연간 잡 | 수입 총 | ·액(D) | |
|---|----|-------|------|-------|-----------|
|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 연간 | 십억 일억 | 천 백 | 십 | 만원 |
| | | | | | |

| [보조기입란 | [보조기입란 5-b].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 의 세부항목 | | | | | | | | |
|----------|---|----|----|--------------|----|---|---|---|----|
| ※ 농림축산업 | ※ 농림축산업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 | | | | | | | |
| 지출항목 | | | 연건 | <u>가</u> 품목별 | 비용 | | | | |
| 재료비 |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노무비 | 지불임금(남자, 여자)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경비 |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 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기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잡지출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판매 및 관리비 |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u>사용가능연한(내구연수)을 질문</u>하여 그 <u>연수(年數)만큼</u>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u>10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u> 한 경우 <u>100만원으로 기재</u>
-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 5-4.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연간 총비용(E) |
|--|----------------------|
| | 연간 입억 천 백 십 일 |
|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1년 (2014.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연간 순소득 (A+B+C+D-E) |
|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 연간 입억 천 백 십 일 |

문 6) 어업 경영주

| [보조기 | 입란 6-a] 2014년 1년(2014.1.1~12 | .31) 동안 역 | 년간 판매 수 | 입, 자가소병 | 비액, 이전소 | 비액 | | | |
|-----------|---|-----------|----------------|------------------|------------------|-------------------------------------|-----------------------------------|---|--|
| |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 | 함. | | | | | | | |
| 분류 | 예 시 | 종류 | 판매량 (a) | 자가 소비량 (b) | 이전 소비량 (c) | 판매단가 (천원) (p) | 판매수입 (만원) (A=a*p÷10) | 자가 소비액 (만원) (B =b*p÷10) | 이전 소비액 (만원) (C= c*p÷10) |
| 어로 어업 |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 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 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 | | | | | | | |
| 양식 어업 |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 | | | | | | | |
| 수산 가공업 |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 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 | | | | | | | |
| | 총계 | | | | | | | | |

| 6-1. 2014년 1년(2014.1.1 | ~12.31) | 동안 출하한 | 수산물의 연 | 간 판매수 | 입, 자가소비약 | 색, 이전소비액 | 은 얼마였 | 였습니까 ? | |
|--|------------|-------------------|---------------|---------------|-------------------|----------|-------------|---------------------|---------|
|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 | | | | | | | | |
| 면 간 총 십억 일억 천 백 십 | 만 원 | 연 간 총 십억 일약 | 천 백 | 만 원 십 일 | 연 간 총 십억 일억 | 천 백 십 | 만 원 일 | 연 간 총 십억 일억 7 | 전 백 십 일 |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없음 0

| 6-2.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 연간 잡수입 총액(D) |
|---|---------------|
|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연간 입억 천 백 십 일 |

| [보조기입련 | 라 6-b]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형 | 목 | | | | | | | |
|--------|---|----|----|----|---|---|---|---|----|
| ※ 가구에서 |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 | | | | | | | |
| 지출항목 | | | | | | | | | |
| 어로지출 |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 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수산가공지출 |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6-3.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 | 연긴 | 총비 | 용(E) | | |
|---|----|------|------|-------|------|------|-----------|
|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1년 | | 연간 | 순소 | ≒(A+E | 3+C+ | -D-E |) |
| (2014.1.1~12.31) 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 연간 | 1101 | 0101 | -1 | ull. | | 만원 |

문 7) 기타 근로소득: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 성명 | 가구원 번호 | | 연 | 간 기 | 기타 i | 근로: | 소득 | | |
|--|----|-----------|----|----|-----|------|-----|----|---|----|
| | | 1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2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 | 3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벌어들인 소득 | | 4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순서는 <u>반드시</u>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5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6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7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8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9 | 연간 | 신억 | 일억 | 처 | 백 | 십 | 일 | 만원 |

| | 4 년 1년(20 1 음 소득은 얼 | 14.1.1~12.31) 동안 마입니까? | 세부 항목 | | | | 금 | 액 | | |
|-------|-------------------------------|---|---|----|----|----|----------|---|---|---------|
| | | 2014년 1년 동안 얻은 재산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문 8) | 재 산 소 득 | 월평균액 ×12를 하고, 일시금 으로 들어오는 경우일시금 금 액을 그대로 기입 예)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u>천</u> | 백 | 십 | 만원 |
| | | 1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 (10×12)+100= 220만원으로 기입 | ③ 기 타(자격증 대여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 2014년 1년 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 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문 9) | 사 회 보 험 | ※ 일시불은 제외 |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 |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문 10) | 민 간 보 험 | 2014년 1년 동안 받은 민간보험사에 |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서 받은 총 개인연금액은? | ② 퇴직연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밀 |
| | | | ②-1 기초노령연금(2014년 1월~6월)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②-2 기초연금(2014년 7월~12월)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③ 한부모가족지원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2014년 1년 동안 정부(동 사무소로) |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 장 급여 제외)의 유형별 금액은? |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6 납기 세위 /의 미 6일 납기다. |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일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 14) 번 문항에 기입 |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 연간 | 십억 | | | | 십 | 일 만원 |
| | |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 | ⑦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 연간 | 십억 | | | | 십 | 일만원 |
| 문 11) | 기 타 | ※ ⑦, ⑧, ⑨의 경우 농림부에 | ⑧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준 '') | 정부보조금 | 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 ⑨ 농어업 정부보조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외에 수련회비, 노인위생 | ⑩ 긴급복지지원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비, 자활장려금, 출산장려 수당, 노인장수수당, 직업 | ① 기타 바우처 지원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훈련수당, 노인교통비, 교 | ① 근로장려세제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통안전공단지원금 등이 있 | ③ 급식비 지원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 연간 | 십억 | | | 백 | 십 | 일만원 |
| | | ※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 | ④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⑤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b) 기타()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만원 |

| | | | ① 증여·상속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원 |
|-------|---------|---|---|----|----|----|---|---|---|------------|---|
| | | 이 외에 2014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② 경조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 위 | 원 |
| | |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 |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 | 원 |
| 문 12) | 기 타 소 득 | 는 경우 여기서 파악. 월급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상용 또 |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 | 원 |
| | | 는 임시 근로 소득으로 파악 |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 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 | 원 |
| | | |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원 |
| | | |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곗돈 등)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 | 원 |
| 문12-1 | 환급금 | 2014년 1년 동안 돌려받은 환급금 총 액은? | 세금환급금 | 연간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 | 원 |

※ 없음 0

| ※ 201 | 4년 1년(2014. | 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 | | 금 | 액 | | |
|--------------|------------------------|--|---------------------------|------------------------------|----------|---|---|--------------------|
| | 부모나 자녀로부 터의 보조금 | 환선역)의 중요적는? [· | 면 연긴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현금 및 현물) | ※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 <u>일회성</u> 보육대가 포함. <u>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u>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 연긴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문 13) | 9개월 미만 동거 | 2014년 1년 동안 <u>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u>이 함께 살 때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연긴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10) | 가구원의 소득 | 2014년 1년 동안 귀댁의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지 9개월 미만된 가구원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혼수용품이나 혼수비 등을 제외한 정규적인 소득만을 기입함. | 연긴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민 간 보 조 금 (현금 및 현물) | 2014년 1년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수액) 보조금의 총금액은? | · 연긴 | | <u> </u> | | | 만원 |
| | |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2014년 1년 동안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 | <u> </u> 연긴 | 일억 | 천 | 백 | 십 | _일 만원 |
| | | 보장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 4 222 | 일억 | 천 | 백 | 십 | 민편 일 |
| | | 지출을 전제로 한 현물 및 현 | ∄ 연긴 |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문 14)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급 여 | ※ <u>동 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u>. ※ 쌀값 포함(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쌀값을 공제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수급개월수는 현금, 현물지원을 모두 포함해 기입 ※ 단, 연간금액은 현금급여액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저 ※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회 ※ 수급개월수는 2014년 수급개월수를 적고, 연간 금액은 <u>월평균(현금급0</u>2014년 3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받았다면, 수급개월수에는 03, 금액에는 60 | 급여) 용품비 액)×수 | 을 기입)+해산ā :급개월 | 급여+장. | | | 입(예, |

IX. 부채, 이자

| | | 부채 및 이자 에 대한 질문입니다. 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 세부항목 | | 금액 | |
|------|------------|--|--|----------------|----------------|----|
| | | 2014.12.31 기준 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 은 얼마입니까? |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 십억 일억 | 천 백 십 <u>6</u> | 만원 |
| | | | ② 일반사채 | 십억 일억 | 천 백 십 <u>6</u> | 만원 |
| | | ※ 명의기준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 카드 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⑤ 외상, 할부구입, 미리탄 곗돈에 포함. | 십억 일억 | 천 백 십 <u>9</u> | 만원 | |
| 문 1) | 부 채 형 태 |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 기타 부채에 기입함. |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 십억 일억 | 천 백 십 일 | 만원 |
| | | ※ 자동차 할부구매의 경우 카드할부이면 '③카드 방'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으면 '⑤ 외상, (자동 차 등)할부 구입'으로 기록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부금, 사회보험 연체금 등은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 ⑤ 외상, (자동차 등)할부 구입, 미리탄 곗돈 ※ 미리 탄 곗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 십억 일억 | 천 백 십 일 | 만원 |
| | | ※ 세부항목별로 부채가 없는 경우, '0' | ⑥ 기타부채() | 십억 일억 | 천 백 십 일 | 만원 |
| | O.J.T.I | 2014년 1년(2014.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① 1년동안 거주하였던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연간 | 십억 일억 | 천 백 십 <u>9</u> | 만원 |
| 문 2) | 이자 |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순수이자'만 기입 ※ 연체한 경우, '0' |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연간 | 시어 익어 | | 만원 |

※ 없음 0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14 게) 도 | . 12.31 기준 , 포함된다.) | <u>명의기준</u> 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가 | 세부항목 | 금액 | | | | | | |
|-----------------------|-------------------------------|--|--|----|----|---|---|---|----------|----|
| | | 2014.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기준)은? |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ᅙᆒ | 만원 |
| 문 1) | 소 유 부 동 산 |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 ② 주택외 건물(가족명의의 사업장(가게) ·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 | | ③ 토지(택지,논,밭,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만원 |
| 문 2) | 점 유 | 2014.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① 가게,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띠 | 만원 |
| 正 2) | 부 동 산 |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게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힌 | 만원 |

| | | | | Т | | - | - | - | | $\overline{}$ |
|-------|--|--|--|------|-----------------------------|--|--|------|--|---------------|
| | | ① 예금(저축예금, 청약여 | l금, 정기예금 ⁻ | 등)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 | | 험,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금융자산 | 유형별 가격은? |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스 | 님, 거치식) |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 가구원 전부 파악 | ④ 불입한(타기 전) 곗돈 | |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 | |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 ① 동력탈곡기 | |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일 |
| | 2014.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 | ② 경운기 | |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일 |
| 농 기 계 | | ③ 콤바인 | |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일 |
| | ** 기다에는 필로기, 이렇게, 이렇게 모양된. 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 | ④ 트랙터 | |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 ⑤ 기타(|) | | | | | 백 | | 만원 |
| | | ① 소 | | | | | | 백 | | 만원 |
| | 0014 10 01 기조스크 (피메쉬키 아기) 이쉬기 | ② 돼지 | | | | | | | 만원 | |
| 농축산물 |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③ 닭 | | | | | | | | - 만원 |
| |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 ④ 재고농산물 | | | 십억 | | | 백 | | 만원 |
| | | ⑤ <u>기타(</u> ※ 유실수 포함 |) | 1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 | -차의 대수와 가격은? | 보유대수 | 단위 | | | | | | 만원 |
| 자 동 차 | | | | 대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일 |
| | | | | | | | | | | 가구의 |
| | |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 |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기 타 | 2014.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 ②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오토바이·선박, 굴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 차 번호 값, 기(포크레인), 트 | 트럭 | 십억 | 일억 | 천 | 백 | 십 | 만원 |
| 새 산 | 세선 세산의 휴영털 가격는? | 3 귀금속, 골동품, 상품 | 권 등 | | | | 천 | 백 | | 만원 일 |
| | | ④ 기타(| |) | 시어 | 일억 | 천 | 백 | | 만원 |
| | 농 기 계 농축산물 | * 가구원 전부 파악 2014.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양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 2014.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자 자동차 및 식용 가축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히 기 타 2014.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급용자식의 유형별 가격은? | 급용자산 | 금융자산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20 속라(전)적공, 연극형 국문, 중신보학, 항역 가격은? # 기구인 전부 회약 20 속라(제) 변의로 문, 아파트 중요급에(약급) 가격은? # 기타에는 삼포기, 이엉기, 미증기(도정기), 토테라는 당한 기가 등에는 보존기, 이엉기, 미증기(도정기), 토테라는 당한 기가 등에는 보존기 등에 보존되는 등에는 함께 가격은? # 에진은 및 식용 가축 세외 20 대지 20 대지 | 급용자산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급용자산의 응한번 가격은? ※ 기구원 전부 피막 2014.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 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설포기, 이망기, 미증기(도선 기), 보형관리기, 로타리 등이 포함됨. 2014.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 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설포기, 이망기, 미증기(도선 기), 보형관리기, 로타리 등이 포함됨. 2014.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유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예원용 및 식용 가착 세외 2014.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유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예원용 및 식용 가착 세외 2014.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유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예원용 및 식용 가착 세외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형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2014.12.31 기준으로 유하고 계신 비형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형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2014.12.31 기준으로 유하고 계신 비형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형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2014.12.31 기준으로 유하고 계신 비형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형업용 자동차를 한제 대수 기구으로 변화 전혀 | 급용자산 | 2014.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급용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기구의 신부 피약 2014.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당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단에는 실포기, 이었기, 미경기(도점 기간, 모든 함께 하시는 이 기자 기간, 도행원리기, 군단리 등이 포단된. 2014.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당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단에는 실포기, 이었기, 미경기(도점 기간, 모든 함께 하시는 이 기자 무점 기가, 도행원리기, 군단리 등이 포단된. 2014.12.31 기준으로 (중에하시 않고) 사유하고 있는 동속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예약은 및 식용 가족 세외 2014.12.31 기준으로 (중에하시 않고) 사유하고 있는 동속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예약은 및 식용 가족 세외 3 등에 보고 기자 설로 함께 하시는 이 기자 기관으로 연결하는 기자 기가 | 급용자산 |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2014년 1년 동안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구 분 | 있다 | 없다 | 비해당 |
|----------|---|----|----|-----|
| 2 | 2014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 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1 | 2 | 3 |
| ¥ | 2014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1 | 2 | |
| 다 | 2014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 1 | 2 | |
| 라 | 2014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1 | 2 | 3 |
| P | 2014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1 | 2 | |
| H) | 2014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1 | 2 | |
| 4 | 2014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 1 | 2 | |
| <u></u> | 2014년 1년 동안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 1 | 2 | 3 |

〈 유의사항 〉

- ※ ⑦ 문항의 경우 2014년 1년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② 문항의 경우 <u>자녀가 없거나</u> 혹은 자녀가 '<u>미취학'</u>, '<u>대학원생(석·박사)</u>'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④ 문항의 경우 2014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14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있다'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2014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문 2) **2014년 1년 동안**에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구 분 | 자주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모름/거부 |
|--|-----------|-----------|-----------------|-------|
| 2014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u>떨어졌는데도 더 살</u> 돈이 없었다. | 1 | 2 | 3 | 4 |
| 2014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u>균형 잡</u> <u>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u> 를 할 수가 없었다. | 1 | 2 | 3 | 4 |

| | 구 분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거부 |
|----------|---|-------------------------------|-------------------------------|-------------------------------|
| 4 | 2014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기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 이 있습니까? | ① → <mark>만로 갈</mark> 것 | ② → <mark>마로 갈</mark> 것 | ③ → <mark>⊕로 길</mark> 式 |
| a | (ⓒ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월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 | | |
| (II) | 2014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u>먹</u> 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 있습니까? | 1 | 2 | 3 |
| (H) | 2014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u>배가</u> 고픈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1 | 2 | 3 |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최저생계비 | 이하의 생활이 | 어려운 저소 | 득층의 생활안경 | 정을 위하여 성 | 생계, 주거, 교 | <u>l</u> 육, 의료 | 등 기본 |
|--------------|--------|----------|------------|----------|----------|-----------|----------------|------|
| 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 제도를 말한 | 한다. 의료특례 | · 자활특례 · 🛭 | 교육특례 등 특 | 례도 포함되며 | i, 가구원 중 | 일부만 : | 수급하는 |
|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 | 한다. | | | | | | | |

| 인 생활을 시원해주는 제도를 달한다. 의료특례·사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구납하는 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한다. | = |
|--|---|
| 문 1) 귀댁은 2014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 <mark>문1-1)로 갈 것</mark>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
|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13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 |
|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
| ① 그렇다 → 문2)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 문1-3)으로 갈 것 | |
| 《 유의사항 》 ※ 2014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14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15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14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14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문 1-3)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② 자동차가 있어서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⑥ 기타(적을 것 :) ⑨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
| 1순위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② 빚을 내어서 생활 ③ 민간단체의 도움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⑨ 기타(적을 것 :) | |

| 문 2) | (모든 응답자) 귀댁은 2014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u>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u> | |
|------|--|-------|
| | ① 2014년 1년 동안 받은 적이 없다 ② 2014년 이전부터 2014년 말까지 받았다 ─────────────────────────────────── | 문2-3) |
| | (b) 2014년 글어와서 받기 시작해서 2014년 달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갈 것 |
| | 문 2-1)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2014년 동안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 | 오. |
| | 첫 번째 2 0 1 4 년 월 ~ 2 0 1 4 년 | 월 |
| | 두 번째 2 0 1 4 년 월 ~ 2 0 1 4 년 | 월 |
| | 세 번째 2 0 1 4 년 월 ~ 2 0 1 4 년 | 월 |
| | 〈 유의사항 〉 ※ 2014년 동안 여러 차례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2014년 이전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2014년 01월부터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문 2-2)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
|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
|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
|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
|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⑨ 기타(적을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2014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수급한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 문 2-3)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 |
| | 〈 유의사항 〉 ※ 2014년 등이 스크고 타고를 바보하면요 기자 최고에 바오 그어스즈의 기즈이고 의대해 조사사이 | |
| | ※ 2014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문 3) |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귀댁은 앞으로 얼마 후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 | ① 6개월 이내④ 3년 후② 6개월 후 ~ 1년 이내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③ 1년 후 ~ 3년 이내⑨ 잘 모르겠다. | |

| 듄 | 귀댁이 수급대상에서 벗어 ① 의료비 지원 | ナ)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생계비 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지 ④ 자활관련 지원 ⑤ 기타(적을 것 : 용답 후 'XII-1. 근로 | 가? (하나만 응답)) |
|------|--|---|------------------|
| | | 8 日 ∓ XII − 1. C.Σ | |
| 문 4) | (문2)의 ④, ⑤번 응답자만) 구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댁이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어 | 서 탈피하게 된 가장 |
|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⑩ 기타(적을 것 : | 재산이 늘어서 | |
| 듄 | | 만) 귀댁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더 이상 변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 |
| |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⑤ 없다 ⑥ 기타(적을 것 : |) |

XII-1. 근로장려세저

| 급함으 | 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 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지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구)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
| 문 1) |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
| 문 2) | 귀댁은 가구 생성이후 2014년 5월 경에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 3)으로 갈 것 |
| | 문 2-1) 귀댁은 2014년 추석 즈음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① 있다 → 문2-2)로 갈 기 ② 없다 → 문 3)으로 갈 기 |
| | ※ 유의사항: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u>정부보조금란</u> 의 <u>근로장려세제란</u> 에 정확한 급여액을 기입함. |
| | 문 2-2) 수급한 근로장려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① 아이들 교육비 ② 일상생활비 ③ 의료비 ④ 문화오락비 ⑤ 저축 ⑥ 기타 |
| | 문 2-3) 귀댁의 근로장려세제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주는 도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 | 문 2-4) |
| 문 3) | 귀댁은 금년(2014년)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②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③ 잘 모르겠다 |
| | 문 3-1) 귀댁은 금년(2014년)에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입니까? ① 신청할 것이다(하였다) ②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2014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있다 | 없다 |
|--|----|----|
| ④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 1 | 2 |
| ④ 의료비 지원 | 1) | 2 |
|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 1) | 2 |
| 과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 1) | 2 |
| ⑩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 1 | 2 |
| ⑩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 1 | 2 |
| ④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 1) | 2 |
| ◎ 상담서비스 | 1) | 2 |
| ②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 1 | 2 |
| ③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 1) | 2 |

〈 유의사항 〉

※ <u>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u>
 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②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료급여 제외),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금(생계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⑮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①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활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⑥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④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한다.
- ※ ⑥ 상담서비스: 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를 말한다.
- ※ ④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 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③ 개인발달계좌: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 부의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자활사업 내일키움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 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무 2) | 2014년 1년간 | 바우처서비스를 | 이용해 | 보신 적이 | 있습니까? |
|----------|-----------|---------|--------|----------|----------|
| <u> </u> | | | ~10~11 | <u> </u> | M = 1/1: |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14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있다 | 없다 |
|--------------------------------|----|----|
| 코인돌봄종합서비스 | 1 | 2 |
| ③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1 | 2 |
|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 | 1 | 2 |
| 라사간병 방문관리사지원사업 | 1 | 2 |
| ⑩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 1 | 2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 1 | 2 |
| ② 발달재활서비스 | 1) | 2 |
| ⊕ i사랑 보육서비스(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 포함) | 1) | 2 |
| ④ 언어발달지원사업 | 1) | 2 |
| ③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1) | 2 |
| 🄊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 1) | 2 |

- ※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하다
- ※ ⓒ 산모/신생이 건강관리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이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②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④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④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⑥ i사랑 보육서비스(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 포함): i사랑 보육서비스는 영유아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은 유치원 취원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말한다.
- ※ ② 언어발달지원사업: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왼화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 ⑦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실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u>65세 이상 노인</u> 및 <u>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u>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문 3) | 2014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댁이 지불하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 월단위 | 백만 | 십만 | 일만 | 천 | 천원 |
|---------------------|----|-------|-------|------------|-----------------------------------|
| 〈 유의 ※ 본인 | | 급여 항목 | ¦을 포함 | <u></u> 서비 | 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2014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 급여(서비스) 유형 | 있다 | 없다 |
|---|----|----|
| ③ 방문요양(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 1 | 2 |
| ④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 1 | 2 |
| 🗈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 1 | 2 |
| 관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1) | 2 |
| 만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 1) | 2 |
| ⑪ 기타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용구) | 1) | 2 |
| ④ 시설급여(2014년 중 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 1 | 2 |
| ⊕ 특별현금급여(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 1 | 2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4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있다 | 없다 |
|------------------------------------|----|----|
| ②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지원 | 1 | 2 |
| ④ 의료비 지원 | 1 | 2 |
| ④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 1) | 2 |
| ②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 1 | 2 |
| ⑪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 1 | 2 |
| ꂌ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 1 | 2 |
| ④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 1 | 2 |
|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 1 | 2 |
| ③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 1 | 2 |
| ③ 노인일자리사업 | 1 | 2 |
| 🄊 사회교육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 1 | 2 |

〈 유의사항 〉

※ <u>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u>
 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①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활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⑥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노인돌보미나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경우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에 '예'라고 응답한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4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있다 | 없다 |
|---|----|----|
| ③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 1 | 2 |
| ④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 1 | 2 |
|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 1 | 2 |
| 환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 1 | 2 |
| ⑩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 1 | 2 |
| ꂌ 학비 지원 | 1 | 2 |
| ④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 1 | 2 |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 1 | 2 |
| ③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 1 | 2 |
| ③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 1 | 2 |

〈 유의사항 〉

※ <u>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u>
 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②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 ※ ⊕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다음 문2)~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 l습니까? 있다면 그 아동(자녀)은 누구입니까? | <u>동안에</u> 새로 가구원으로 진입(출산, 입양 등)한 아동(자녀)이 원 중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재해주십시오.) | |
|-------|---|---|--|
| 1 |) 있다 → 문 2-1)로 갈 것 ② | 없다 → 문 3)으로 갈 것 | |
| 문 2-1 |)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① 그렇다 | □□□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습니까? | |
| 문 2-2 |)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선천성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습니까? | □□□은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 |
|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

|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시오) |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 문2-1) 체중 |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②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 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 구 분 | <보 기> | |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 5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
| 민간학원 및 사교육 | ® 학원 ⑨ 개인·그룹과외 |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
|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 ①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 ②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여 | , |
| 기타 | (3)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4)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6) 민간 아이 돌보미 (7) 기타(적을 것 : |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선교원, 문화센터 등) |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 아동(자녀)의 | 아동(자녀) | 문 3) 이용여부 | | 문4) |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 |
|---------|---------|----------------------|-----|------|--------------------|-------------------|--|
| 가구원 번호 | 가구원의 이름 | 한다 | 안한다 | 이용기관 | (부대비용 포함) | (부대비용 포함) | |
| | | | | A | 월평균 | 월평균 | |
| | | 1 | 2 | В | 만원 | 만원 | |
| | | | | С | | | |
| | | | | A | 월평균 | 월평균 | |
| | | 1 | 2 | В | 만원 | 만원 | |
| | | | | С | | | |
| | | | | A | 월평균 | 월평균 | |
| | | 1 | 2 | В | 만원 | 만원 | |
| | | | | | С | | |
| | | | | A | 월평균 | 월평균 | |
| | | 1 | 2 | В | 만원 | 만원 | |
| | | | | С | | | |
| | | | | A | 월평균 | 월평균 | |
| | | 1 | 2 | В | 만원 | 만원 | |
| | | | | С | | | |
| | | | | A | 월평균 | 월평균 | |
| | | 1 | 2 | В | 만원 | 만원 | |
| | | | | С | | | |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14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 서비스 유형 | 있다 | 없다 |
|------------------------------------|----|----|
| ③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 1 | 2 |
| ④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 1 | 2 |
| ④ 장애아동수당 | 1 | 2 |
| ④ 의료재활서비스 | 1 | 2 |
| ⑪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 1 | 2 |
| ꂌ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 1 | 2 |
| ④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 1 | 2 |
|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 1 | 2 |
| ③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 1 | 2 |
| ③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 1) | 2 |
| ③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 1 | 2 |
|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 1 | 2 |
| 화 자동차 관련 지원 | 1 | 2 |

〈 유의사항 〉

※ <u>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u> 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② 의료재활서비스: 장애로 인한 의료서비스, 재활치료,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장애인보장구 할인 등이 포함된다.
- ※ ④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⑥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②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도 포함된다.
- ※ ②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XVII. 가족

문 1) **2014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 | 1순위 | | 2순위 | |
|--|-----|--|-----|--|
|--|-----|--|-----|--|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 ①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 ②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 ③ 자녀교육 혹은 행동
- ④ 가구원의 건강
- ⑤ 가구원의 알코올

- ⑥ 가족 내 폭력
- ⑦ 가구원간 관계
- ⑧ 가구원의 가출
- ⑨ 주거관련 문제
- ⑩ 기타(적을 것:
- ① 자녀의 결혼문제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14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독신가구이면서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 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비해당 |
|-----------------------------------|-----------------|------------------|----------|-----------|-----------|-----|
| ⑦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 1 | 2 | 3 | 4 | 5 | 0 |
| ④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 1 | 2 | 3 | 4 | 5 | 0 |
|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 1 | 2 | 3 | 4) | 5 | 0 |
|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 1) | 2 | 3 | 4) | 5 | 0 |
| ⑪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 1 | 2 | 3 | 4 | 5 | 0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